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1299호) 개정 · 공포 알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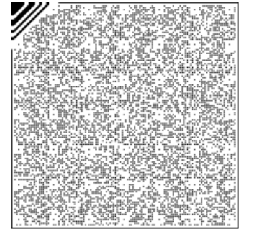
1.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1299호)이 2025. 12. 30.자로 불임과 같이 개정 ·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<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>

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, 제조 · 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(DNA, Deoxyribonucleic acid)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,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,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 · 축산물 ·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· 분석 · 기록 · 관리 ·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·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
2. 아울러, 개정법률은 2025.12.30.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「식품위생법」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21299호) 1부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관계부처, 본부(57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8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4개 전부서), 지자체 및 관련 협회, 산하기관 등

주무관 **손익재** 연구관 **홍정미** 식품안전정책 전결 2025. 12. 31.
과장 **최종동**

협조자

시행 식품안전정책과-13662 (2025. 12. 31.) 접수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014 팩스번호 043-719-2000 / sij0301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